

하도록 함으로써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책임성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집행(영 제3조의6 내지 제3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한국벤처투자조합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요건을 출자금 총액은 10억원 이상, 유한책임조합원수는 99인 이하, 존속기간은 5년 이상으로 정하고,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증개하는 행위 등을 제한함.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한국벤처투자조합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 및 사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오 영 교
장 관

○대통령령 제18768호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2조제3항제1호중 “계열회사”를 “계열회사(「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성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설립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업투자 목적 또는 신기술사업자 지원 목적으로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에 따른 계열회사를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중 “제15조의5(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의 타회사 주식소유제한)의 규정에 따른 회사”를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사업관련손자회사의 기준) 법 제2조제1호의4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를 말한다.

1.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의 운송·보관·판매 또는 용역의 판매
2. 자회사가 생산한 상품·용역에 대한 유지·관리 또는 상품에 대한 보수 등 용역의 공급
3. 자회사의 상품·용역을 주요 생산요소로 한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4. 자회사가 필요로 하는 원재료·용역 등 생산요소의 공급
5.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연구개발
6. 자회사가 생산하는 상품·용역과 동일하거나 생산기술의 대부분을 공유하는 상품·용역의 생산 또는 판매
7. 그 밖에 자회사의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업

제3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3조(기업집단의 범위)”를 “제3조”로 하고, 동항제2호라목 단서중 “거래”를 “법 제10조의2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 및 거래”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나목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동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동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2조의3중 “법 제7조(기업결합의 제한)제1항제5호가목 및 법 제11조(금융회사 또는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제3호 후단”을 “법 제7조제1항제5호가목, 법 제8조의2제1항제1호 및 법 제11조제3호 후단”으로, “제11조(특수관계인의 범위)제3호”를 “제11조제3호”로 한다.

제15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를 “법 제8조”로, “신고인·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성명 또는 명칭”을 “신고인의 성명,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명칭”으로 하고, 동항제3호중 “증감으로”를 “증감 및 그 밖의 사유로”로 하여 이를 제4호로 하며, 동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다른 법률에 따라 법 제8조의 적용이 제외되는 회사의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제외기간이 지난 날부터 30일 이내

제15조의2중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 등)제1항제2호 본문”을 “법 제8조의2제1항제2호”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정의)제1항”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3을 삭제한다.

제15조의4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1항제4호”를 “법 제8조의2제2항제4호 본문”으로 한다.

제15조의5를 삭제한다.

제15조의6의 제목중 “지주회사”를 “지주회사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중 “법 제8조의2(지주회사의 행위제한등)제3항”을 “법 제8조의2 제5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지주회사·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로 하고, 동항제2호 내지 제4호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각각 “지주회사등”으로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한다.

제15조의6제2항제1호중 “지주회사 및 자회사”를 “지주회사등”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각각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항제2호중 “자회사”를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로 하며, 동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자회사 및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영업보고서

제17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을 “법 제10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 및 동항제2호 단서중 “5조원”을 각각 “6조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동일인이 자연인인 기업집단중 매년 4월 1일 당시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산출되는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을 차감(差減)하여 산출한 비율이 100분의 25 이하이고,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이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의 3배 이하인 기업집단

5. 법 제10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른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이고, 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간에 2단계출자(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고, 그 다른 계열회사가 또 다른 계열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말한다)를 초과하지 아니한 기업집단

제17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의 소유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기업집단의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상법」 제369조 및 제370조의 규정에 따른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의 친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의 의결지분율은 각각의 계열회사별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한 주식의 지분율

(각각의 계열회사의 발행주식총수에서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비율을 말한다)에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을 곱하여 산출된 수치를 합산한 후 각각의 계열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합계액으로 나누어 산출한다.

제17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1항제4호 본문”을 “법 제10조제1항제4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0조제1항제4호 본문”을 “법 제10조제1항제4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항제1호중 “영업[통계법 제17조(통계자료의 분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을 “영업(「통계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다)”으로 하고,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영업을 양도하여 그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에는 동종업종을 영위하고 있는 다른 회사가 그 신설되는 회사에 현물출자하거나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2제2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4호중 “물적분할하여”를 “물적 분할하거나 인적 분할하여”로 하며, 동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

이 신설한다.

다만, 인적 분할의 경우에는 자기주식의 비율 안에서 신설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거나 소유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17조의2제2항제7호·제7호의2 및 제7호의3을 각각 삭제하고, 동항제9호 각목외의 부분중 “중소기업기본법”을 “「중소기업기본법」”으로, “다음 각목의 1”을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로, “100분의 30”을 “100분의 50”으로 하고, 동호가목중 “원료 또는 부품을”을 “원료·부품 또는 소재를”로 하며, 동호나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벤처기업. 다만, 취득 또는 소유하고 있는 주식의 발행회사가 벤처기업이 아닌 회사가 된 경우에는 그 날부터 6월에 한한다.

제17조의2제2항제10호 각목외의 부분 후단중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를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신기술을 기업화하려는 새로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설립 후 2년간은 제10호 각목의 신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한 제품의 최근 1년간 매출액이 그 회사의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에도 불구하고 신기술을 이용하여 기업화한 것으로 본다)”로 하고, 동호에 바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3항을 삭제한다.

바.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제13조의2제4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차세대성장동력산업의 종합계획에 포함된 기술로서 관계법령에 따라 해

당 기술의 주관 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기술

제17조의2제5항 각호외의 부분 본문중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 제3호”를 “법 제10조제6항제3호”로 하고, 동항 단서중 “법 제10조(출자총액의 제한)제6항 본문”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가목 및 나목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을 각각 “출자 당시 영위하고 있는 영업 중 최근 3개 사업연도 매출액”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금지)제1항제3호”를 “법 제10조의2제1항제3호”로, “다음 각호의 1”을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동항제7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제1호 또는 제2호”를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로 한다.

제17조의8제2항중 “법 제11조의2(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1항”을 “법 제11조의2제1항”으로, “당해 회사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를 “그 회사의 자본총계 또는 자본금중 큰 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인 거래행위”로 한다.

제17조의9 및 제17조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9(출자총액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회사) ①법 제10조제7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시·건제장치를 갖춘 회사”라 함은 다음 각호의

요건 중 세 가지 이상에 해당된다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상법」 제368조의3의 규정에 따라 서면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
2. 「상법」 제382조의2의 규정에 따라 집중투표에 따른 의결권 행사가 가능할 것
3. 특수관계인(제11조제3호를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이하 “내부거래”라 한다)를 심사·승인하는 권한을 가진 「상법」 제39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위원회(이하 “내부거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단일 또는 연간 총거래규모가 10억원 이상(상품·용역의 경우에는 단일 거래규모가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내부거래에 대하여 내부거래위원회의 제적 과반수의 찬성을 얻도록 할 것. 이 경우 내부거래위원회는 모두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4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4. 「증권거래법」 제54조의5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동 위원회와는 별도로 동 위원회에 사외이사후보를 추천하는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을 설치·운영할 것. 이 경우 사외

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모두 「증권거래법」 제2조제19항의 규정에 따른 사외이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4인 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은 모두 기업집단 외부인사로 구성하되, 그 수는 5인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정거래위원회는 제1항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7조의10(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①법 제11조의3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라 함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를 말한다.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이 70억원 미만인 회사로서 청산 중에 있거나 1년 이상 휴업 중에 있는 회사를 제외한다.

②법 제11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대주주(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합산하여 최대출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를 포함한다)의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2. 임원의 구성현황 및 그 변동사항

3. 계열회사 주식보유현황 및 그 보유주식비율이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 이상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변동사항

③법 제11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고정자산의 취득 또는 처분[「신탁업법」에 따른 신탁계약(그 법인이 운용지시권한을 가지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따른 사모간접투자기구(그 법인이 자산운용에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 한한다)를 통한 취득·처분을 포함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자기자본의 100분의 5 이상의 다른 법인(계열회사를 제외한다)의 주식 및 출자증권의 취득 또는 처분(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자기자본의 100분의 1 이상의 증여(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을 말한다)를 하거나 받기로 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4.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의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 또는 채무보증(계약 등의 이행보증 및 납세보증을 위한 채무보증은 제외하고, 이미 신고한

부분을 제외한 그 사업연도의 누계잔액을 말한다)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자기자본의 100분의 3 이상의 채무를 면제 또는 인수하기로 결정하거나 채무를 면제받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증자 또는 감자(減資)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④법 제11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 제374조·제522조·제527조의2·제527조의3·제530조의2의 규정에 따른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2. 「상법」 제360조의2의 규정에 따른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관한 결정이 있거나 「상법」 제360조의15의 규정에 따른 주식이전에 관한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3. 「상법」 제517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해산사유

4. 「회사정리법」에 따른 회사정리절차의 개시·종결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5. 「화의법」에 따른 화의개시 또는 폐지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6.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제12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절차의 개시·중단 또는 해제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7.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단일 판매계약 또는 공급계약을 체결하거나 그 계약을 해지하는 결정이 있는 때에는 그 결정사항

⑤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최근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자기자본, 최근 사업연도 매출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적용하고, “그 사업연도 누계금액” 및 “그 사업연도 누계잔액”은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그 다음 사업연도 종료 후 3월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누계하여 산정한다.

제18조제1항중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1항 본문”을 “법 제12조제1항 전단”으로, “규모(계열회사의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을 합산한 규모를 말한다)”를 “규모”로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4항을 각각 제3항 내지 제5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4항(중전의 제3항) 전단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동항 후단중 “법 제12조(기업결합

의 신고)제6항 및 제8항”을 “법 제12조제7항 및 제9항”으로 한다.

②법 제12조제1항 부분 전단에서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의 규모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다른 회사”라 함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억원 이상인 회사를 말한다.

제18조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7항 및 제9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제8항 및 제10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라 함은 최대출자자가 아닌 상태에서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를 말한다.

⑧법 제1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날을 말한다.

1.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게 되거나 최대출자자가 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날

가.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취득하고자 하는 주식의 소유자와 계약·합의 등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합의 등을 한 날

나. 「증권거래법」에 따른 공개매수 및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주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7항제1호 각목의 날

2. 합병·영업양수가 있는 경우에는 합병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영업양

수계약을 체결한 날

3. 새로운 회사설립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회사설립의 참여에 대한 주주총회 또는 이에 갈음하는 이사회 의결이 있는 날

⑩법 제12조제7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제8항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8조제7항(중전의 제5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본문”을 “법 제12조제2항 본문 및 제6항 본문”으로 하고, 동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취득하는”을 “소유하게 되거나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으로 하며, 동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9항(중전의 제6항)중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5항 단서”를 “법 제12조제6항 단서”로,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을 “주식의 소유일, 합병의 등기일·영업의 양수일”로 한다.

라.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감자 또는 주식의 소각 그 밖의 사유로 주식소유비율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주식소유비율의 증가가 확정되는 날

제19조제1항중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제9항”을 “법 제12조제10항 단서”로 한다.

제21조제4항 내지 제7항을 각각 제5항 내지 제8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4항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법 제14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 70억원을 말한다.

제21조제5항(중전의 제4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4조의3(계열회사의 편입·통지일의 의제)”를 “법 제14조의3”으로 하고, 동조제6항(중전의 제5항) 전단중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등의 지정 등)제1항”을 “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법 제14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7항(중전의 제6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동조제8항(중전의 제7항) 각호외의 부분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항제1호 본문 및 단서중 “제17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등의 범위)제1항제5호가목”을 각각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으로 하고, 동항제1호 단서 및 동항제2호중 “3조5천억원”을 각각 “4조2천억원”으로 하며, 동항제3호를 삭제하고, 동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정일 이후에 제17조제2항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21조의3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15조(탈법행위의 금지)제1항”을 “법 제15조제1항”으로 하고, 동항제1호를 삭제하며, 동항제3호중 “기타 제1호 및 제2호”를 “그 밖에 제2호”로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23조를 삭제하고, 제23조의2 내지 제23조의4를 각각 제23조의3 내지 제

23조의5로 하고,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기준대차대조표의 범위) 법 제17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대차대조표”라 함은 법 제8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최초로 나타난 대차대조표를 말한다. 다만, 대차대조표 작성 전에 법 위반행위(법 제8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법 위반행위를 제외한다)가 시정되어 대차대조표에 법 위반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위반일을 기준으로 작성한 대차대조표에 따른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5조(신고자 등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 ①법 제22조의2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의 감경 또는 면제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신고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2.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신고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3.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하거나 면제한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최초의 자일 것

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하였거나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

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에 협조하였을 것

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라.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하였을 것

4.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한 후에 조사에 협조한 자로서 다음 각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가. 부당한 공동행위임을 입증하는데 필요한 증거를 단독으로 제공한 두 번째의 자일 것

나.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협조하였을 것

다. 그 부당한 공동행위를 중단 하였을 것

5.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하여 과징금 부과 또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된 자가 그 부당한 공동행위 외에 그 자가 관련되어 있는 다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제1호 각목 또는 제3호 각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다시 과징금을 감경 또는 면제하고, 시정조치를 감경할 수 있다.

②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사전 동의 없이 신고

자 또는 조사에 협조한 자의 신원, 제보내용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신고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감면정도, 감면제도의 세부운영절차 및 증거제출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5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7조의2(조사 등의 연기신청) ①법 제50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합병·인수, 화의 또는 법정관리신청 또는 파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2. 권한 있는 기관에 장부·증거서류가 압수 또는 영치된 경우
3. 화재 등으로 인하여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사업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

②법 제50조의3제1항의 규정에 따른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주소
2.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기간

3. 처분 또는 조사의 연기를 받고자 하는 사유

제61조의2제3항을 삭제한다.

제64조제1항중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채납처분)제2항”을 “법 제55조의6제2항”으로 한다.

제64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55조의5(과징금 징수 및 채납처분)제3항”을 “법 제55조의6제3항”으로 한다.

제64조의3제1항중 “법 제55조의5(과징금징수 및 채납처분)제4항”을 “법 제55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의4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법 제55조의5(과징금징수 및 채납처분)제4항”을 “법 제55조의6제4항”으로 한다.

제64조의4중 “법 제55조의6(과징금 환급가산금)”을 “법 제55조의7”로 한다.

제6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4조의5(포상금의 지급) ①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로 한다.

1. 법 제19조제1항 각호의 부당한 공동행위
2. 법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행위 중 신문업(「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제3호·제5호 및 제6호에서 규정하고 있

는 신문을 발행하거나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3.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행위 중 대규모소매점업(매장면적의 합계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인 동일점포에서 일반소비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말한다)의 불공정거래행위

4. 법 제23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불공정거래행위

5. 법 제2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②법 제64조의2의 규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자는 제1항 각호의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로 한다. 다만, 그 법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를 제외한다.

③공정거래위원회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신고 또는 제보된 행위를 법 위반행위로 의결한 날(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한 날)부터 3월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포상금의 지급에 관여한 조사공무원은 신고자 또는 제보자의 신원 등 신고 또는 제보와 관련된 사항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⑤각 행위유형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기준은 법 위반행위의 중대성 및

증거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⑥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포상금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⑦심의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포상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 제2호가목의 표중 제3호가목의 기본과징금란 본문중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고, 동란 단서중 “10억원”을 “20억원”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제1항중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을 각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3조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상법”을 “「상법」”으로 한다.

제3조의2제1항제3호중 “파산법”을 “「파산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 각목외의 부분중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을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

으로 하며, 동호가목중 “은행법”을 “「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 각목외의 부분 및 동호가목중 “회사정리법”을 각각 “「회사정리법」”으로 하

며, 동조제2항제1호 본문중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정부투자기관관

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하며, 동조제4항 각호의

의 부분 단서중 “전자정부구현을위한행정업무등의전자화촉진에관한법률”을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7조제1항제5호가목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을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3호가목중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로 하고, 동호나목중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을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으로,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시행령”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7조의2제1항제1호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고, 동항제2호중 “생명공학육성법”을 “「생명공학육성법」”으로 하며, 동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으로 하고, 동항제4호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하며, 동항제10호가목중 “정보화촉진기본법”을 “「정보화촉진기본법」”으로 하고, 동호나목중 “기술개발촉진법”을 “「기술개발촉진법」”으로 하며, 동호다목중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하고, 동호라목중 “환경기술개발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을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하며, 동호마목중 “산업발전법시행령”을 “「산업발전법 시행령」”으로 하고, 동조제4항제1호중 “한국전력공사법”을 “「한국전력공사법」”으로 하며, 동항제2호중 “집단에너지사업법”을 “「집단에너지사업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제1호 각목외의 부분중 “통계법”을 “「통계법」”으로 한다.

제17조의5제2항제1호중 “한국수출입은행법”을 “「한국수출입은행법」”으로 하고, 동항제5호가목중 “외국환거래법”을 “「외국환거래법」”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회사정리법”을 “「회사정리법」”으로 한다.

제17조의6중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여신전문금융업법」”으로 한다.

제17조의8제4항제1호중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1조의2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3조의3(중전의 제23조의2)제6항 전단중 “증권거래법”을 “「증권거래법」”으로 한다.

제43조중 “저작권법”을 “「저작권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사회기반시설 관련 출자자의 채무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민간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로서 국내금융기관의 그 계열회사에 대한 여신에 대하여 보증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17조의5제2항제7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

③(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법 제10조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한 기업집단에 대하여는 제17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일부터 1년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④(부당한 공동행위의 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행위로서 이 영 시행 전에 종료되거나 이 영 시행 후에도 그 상태가 지속되는 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이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 개정(법률 제7315호, 2004. 12. 31. 공포, 2005. 4. 1. 시행)되어 기업집단의 소유지배구조를 기업 스스로 개선해 나가도록 내부건제시스템을 잘 갖춘 기업, 소유지배과리도가 적은 기업 등을 출자총액제한 대상에

서 제외하는 등 시장자율규제방식을 정착시키기 위한 여건을 마련하고, 시장감시를 통한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투명성을 높이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회사에 대하여 소유지배구조 등 중요한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는 한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하여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주회사제도의 보완(영 제2조의2 신설)

- (1) 현행 지주회사의 사업관련성 판단기준이 제조업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서비스업 및 정보기술 등은 사업관련성을 인정받기 곤란하고, 자회사와 사업관련손자회사간에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기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 (2) 현행 제조업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업관련손자회사

의 사업관련성 판단요건을 서비스업 등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내용을 보완하고, 자회사와 사업관련손자회사간 거래관계가 없는 경우에도 사업관련성을 인정하는 기준을 추가함.

(3) 지주회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로 인정되어 지주회사가 사업관련손자회사의 사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대기업집단시책의 보완(영 제3조의2제2항제2호나목·제17조의5제2항제7호·제17조의8제2항 및 부칙 제2항, 영 제17조의10 신설)

(1) 시장의 감시기능 강화를 통한 대기업집단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기업집단 소속 비상장·비등록기업의 공시 의무를 구체화하고, 계열분리를 통한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기 위하여 채무보증에 대한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2) 자산규모 2조원 이상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의 비상장회사·비등록회사의 소유지배구조, 재무구조 및 경영

활동에 중요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항을 공시하도록 하고, 계열분리요건의 하나인 채무보증요건에서 산업합리화 채무보증을 제외하며, 채무보증제한기업집단이 사업시행자가 준공 후 사회기반시설의 소유권을 가지는 방식으로 민간 투자사업을 영위하는 계열회사에 출자한 경우에는 동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을 허용하고, 1년 이상 휴업중에 있는 회사 등은 공시의무를 면제함.

(3) 기업집단의 구조조정 촉진 및 독립경영을 유도하고,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감시가 강화되어 대기업집단의 불합리한 경영행태 및 소유지배구조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다.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 상향 조정(영 제17조제2항)

(1) 대규모기업집단이 계열사간 순환출자로 지배력을 확장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기본원칙이 훼손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경제규모의 자연적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하여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합리화하려는 것임.

(2)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 5조원 이상에서 자산 6조원 이상으로 상향 조정함.

(3) 지정기준의 합리화를 통하여 기업의 경제활동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됨

라.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기업집단의 구체화(영 제17조제2항, 영 제17조의9 신설)

(1) 법률에서 새로 도입한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졸업기준을 구체화하여 기업집단의 자율적인 소유지배구조의 개선 및 투명경영노력을 유도하려는 것임.

(2) 집중투표에 의한 의결권행사,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및 사외이사후보추천자문단의 설치 운영 등 내부건제시스템을 갖춘 기업, 계열회사간 3단계 이상 출자가 없고, 계열회사의 수가 5개 이하인 기업집단으로서 계열회사간 출자구조가 단순한 기업집단, 지배주주의 소유와 지배간에 괴리가 적은 기업집단을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순환출자에 따른 소유구조 왜곡문제와 관련성이 없는 부채비율에 의한 졸업기

준은 폐지하되, 동 기준에 따라 이미 졸업한 기업집단에 대해서는 1년간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의 지정을 유예함.

(3) 자율감시장치를 갖춘 상당수의 기업집단이 출자총액제한에서 졸업하여 기업별 자율규제방식으로 전환되고, 계열사간 상호보조·부당내부거래 등을 통한 독과점 시장구조 및 진입장벽 구축 등 왜곡된 시장경쟁질서가 방지될 것으로 기대됨.

마. 출자총액제한제도 예외인정제도의 합리적 보완(영 제17조의2 제2항 및 제5항)

(1)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신산업 및 성장동력 산업 출자를 통하여 고용을 창출하며, 벤처기업 활성화 및 기업의 경영활동에 대한 장애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인정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신산업의 인정요건인 신기술을 이용한 생산품의 매출액 비중을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30으로 완화하고, 차세대 10대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출자를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예외로 인정하며, 원료·부품·소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

대한 예외인정범위를 100분의 30에서 100분의 50으로 확대함.

(3) 대·중소기업간 기술협력이 강화되고, 새로운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대규모기업집단의 시장참여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됨.

바.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개선(영 제18조)

(1) 주식대금납입 후 기업결합신고를 한 경우에는 금지되는 기업결합을 원상복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법률에서 대규모회사의 주식취득에 대한 사후신고를 사전신고로 전환함에 따라 주식취득의 유형별로 구체적 신고시점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밖에서 주식소유자와 계약·합의에 의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계약 또는 합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외에 공개매수에 의한 주식취득 등의 경우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또는 주권교부일 등부터 30일 이내에 기업결합의 신고를 하도록 하며, 자산총액 및 매출액이 30억원

미만인 회사를 기업결합 하는 경우에는 기업결합의 신고의무를 면제함.

(3) 대규모회사의 기업결합에 대한 사전신고가 이루어져 기업결합심사를 내실화함으로써 기업결합금지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사. 카르텔 방지를 위한 제도 보완(영 제35조 및 별표 2)

(1) 법률에서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카르텔의 적발을 쉽게 하기 위하여 내부신고자에 대한 감면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2) 부당공동행위에 대한 기본과징금의 부과기준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10 이내로 상향 조정하고, 최초 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을 모두 면제하며, 2번째 신고자에 대하여 과징금의 100분의 30을 감경하고, 감면대상이 되지 아니하거나 일부감면대상이 된 사업자가 그 공동행위 외에 자신이 참여한 다른 공동행위에 관한 증거를 최초로 제공한 경우에는 다른 공동행위에 대한 과징금 및 시정조치를 모

두 면제함.

(3) 카르텔의 역지력이 높아져 사업자들의 담합유인이 줄어들고, 사업자간 경쟁을 촉진하여 소비자의 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됨.

아. 신고포상제도의 신설(영 제64조의5 신설)

(1) 법률에서 새로이 도입한 신고포상제도와 관련하여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의 유형, 지급 요건 및 절차 등을 구체화하려는 것임.

(2) 사업자 및 사업자단체의 부당공동행위, 부당내부거래행위, 신문업 및 대규모소매점업에 있어서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포상금 지급대상으로 정하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

(3) 소비자 등 시장참여자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기능이 활성화되어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질서가 조기에 정착되고 불공정거래행위가 사전에 억제되는 효과가 기대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노무현 인

2005년 3월31일

국무총리 이 해 찬

국무위원
교육인적
자원부장관
김진표

○대통령령 제18769호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시행령”을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으로 한다.

제16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에는 제1부교육감이 위원장이 된다.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의2(교육감의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①법 제33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의 부교육감을 두는 시·도의 경우에는 제1부교육감·제2부교육감의 순으로 교육감의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